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7. 6.(수) 금융위 회의 후	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	책임자	단 장	권주성 (02-2100-2591)
		담당자	사무관	이경은 (02-2100-2592)

##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

- '22.7.6.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, [ 신규지정 다우키움 ] -

### 주요 내용

- 금융위원회는 '22.7.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,
  -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, 다우키움(자산합계 순서)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\*하였습니다.
  - \*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(시행 '21.6월)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해야 하며, '21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지정
  - 다우키움그룹은 '21년말 자산총액 44.8조원, 주력업종(금투업)의 자산 38.3조원, 비주력업종(저축은행 등)의 자산이 5.1조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'22년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.

### 1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

- 금융위원회는 '22.7.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,
  -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, 다우키움(자산합계 순서)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  - 7개 기업집단은 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복합기업집단법”）」의 지정 요건\*을 모두 충족합니다.

\* ①여수신.보험.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, ②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, ③자산총액 5조원 이상 → 지정 ④다만, 비주력업종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

-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('21.6월)됨에 따라 지난해 7월 6개\*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최초 지정하였으며, 이번이 두 번째 지정입니다.

\*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(자산합계 순서)

- **다우키움그룹**은 저축은행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5.1조원('21년말 재무상태표 기준)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올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.
  - 자산총액('21년말 재무상태표 기준) 44.8조원, 주력업종 자산 38.3조원, 비주력업종 자산 5.1조원으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.

<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('21년말 기준, 조원, 개) >

그룹명	자산합계 <sup>1)</sup>	주력업종 <sup>1)</sup>	비주력업종 <sup>1)</sup>	소속 금융회사 <sup>2)</sup>
삼성	495.2	보험(403.8)	여수신·금투(91.1)	34
한화	164.4	보험(149.9)	여수신·금투(13.5)	19
미래에셋	138.4	금투(87.3)	여수신·보험(48.2)	117
교보	131.5	보험(119.9)	금투(11.5)	10
현대차	74.0	여수신(66.0)	금투(8.0)	44
DB	73.5	보험(63.8)	여수신·금투(9.7)	16
다우키움	44.8	금투(38.3)	여수신(5.1)	41

\* 1) 국내 금융회사 기준, 2) 해외 금융회사 포함

-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, 태광, 카카오, 현대해상 등이 있으며,
  -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※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('21년말 기준)

기업집단	KTB	태광	카카오	현대해상
주력업종	금투(5.1조원)	보험(45.0조원)	여수신(36.0조원)	보험(52.3조원)
비주력업종	여수신(3.6조원)	여수신·금투(3.0조원)	금투(0.4조원)	금투(0.1조원)

-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(자본적정성 등)을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며 내부통제·위험관리·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합니다.
  -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.
- ☞ [별첨]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
  - 다만,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, 내부통제·위험관리, 보고·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됩니다. (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)
-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  - 아울러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동반부실의 위험 최소화,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효과도 기대됩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	책임자	단 장 권주성 (02-2100-2591)
	금융그룹감독혁신단	담당자	사무관 이경은 (02-2100-2592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실 장 김재호 (02-3145-8200)
	금융그룹감독실	담당자	팀 장 최정환 (02-3145-8204)

**1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**

-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, 자산·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\*하여야 합니다.

\*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

**2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·위험관리 등**

-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내부통제·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
\* (내부통제)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,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등  
(위험관리)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·평가·통제 방법,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 배분 방법 등

**3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준수 등**

-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·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$$* \text{자본적정성 비율} = \frac{\text{통합 자기자본 (자기자본합계액 - 중복자본)}}{\text{통합 필요자본 (최소요구자본합계액 + 위험가산자본)}} \geq 100\%$$

- 매년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에 가산(0~20% 비율)하게 됩니다.

\* ①계열회사 위험(30%), ②상호연계성(50%) 및 ③내부통제·위험관리(20%) 등을 평가하여 그룹별 평가등급 확정(1+~5-, 총 15등급)

**4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·공시 등**

-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원\*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\* 자기자본의 5% 해당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

-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·지배구조, ②내부통제·위험관리, ③자본적정성, ④내부거래 등을 보고·공시 하여야 합니다.

## 5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실태평가 등

-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을 평가하는 위험관리 실태평가(3년주기 정기종합평가)를 받아야 합니다.

\* ①내부통제체계, ②위험관리체계, ③자본적정성, ④위험집중·내부거래, ⑤소유구조·위험전이 등 5개 분야 정성평가로 이루어짐

## 6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

-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\*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①자본적정성 비율이 100% 미만 또는 ②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

⇒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2 ~ 6년까지 법 적용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됩니다.(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)